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1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2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3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3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총괄적 검토	5
2. 개정안별 검토의견	12
(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8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

I.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법률명	발의일	회부일	대표발의
1	220611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12.2	2024.12.3	이용우의원
2	22061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220613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220613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주택개량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3조의2 신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신설).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3조의2 신설).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

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5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총괄적 검토

상수원관리지역¹⁾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음²⁾.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³⁾으로, 영산강·섬진강, 한강, 금강, 낙동강 등 각각 수계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⁴⁾⁵⁾, 지역 주민에게

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2)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또한 시장·군수 등 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4개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⁷⁾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각 목 생략)

(이하 생략)

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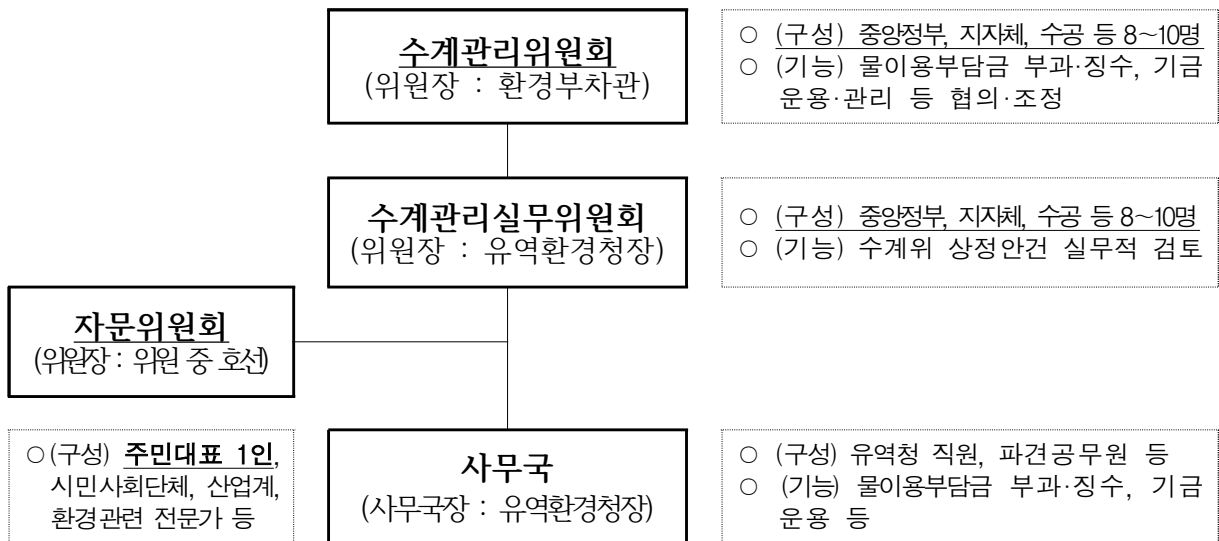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군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체계도



자료: 환경부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4개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수계관리실무위원회 포함)에는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고(참고자료2. 수계별 수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만 지역별 주민대표 1명이 참여⁹⁾하고 있어,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법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다만, 광주광역시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표] 수계별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수계	자문위원회 구성 원수	자문위원회 중 주민대표수	비고
한강	24명	4명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낙동강	25명	6명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도
금강	22명	5명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영산강 섬진강	22명	9명	광주, 전북, 전남7(도, 순천,광양,보성,화순,장흥,영암)

이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에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행법 시행령¹⁰⁾에서 시장·군수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신규 ‘지원협의체’를 통한 협의는 중복 우려가 있으며,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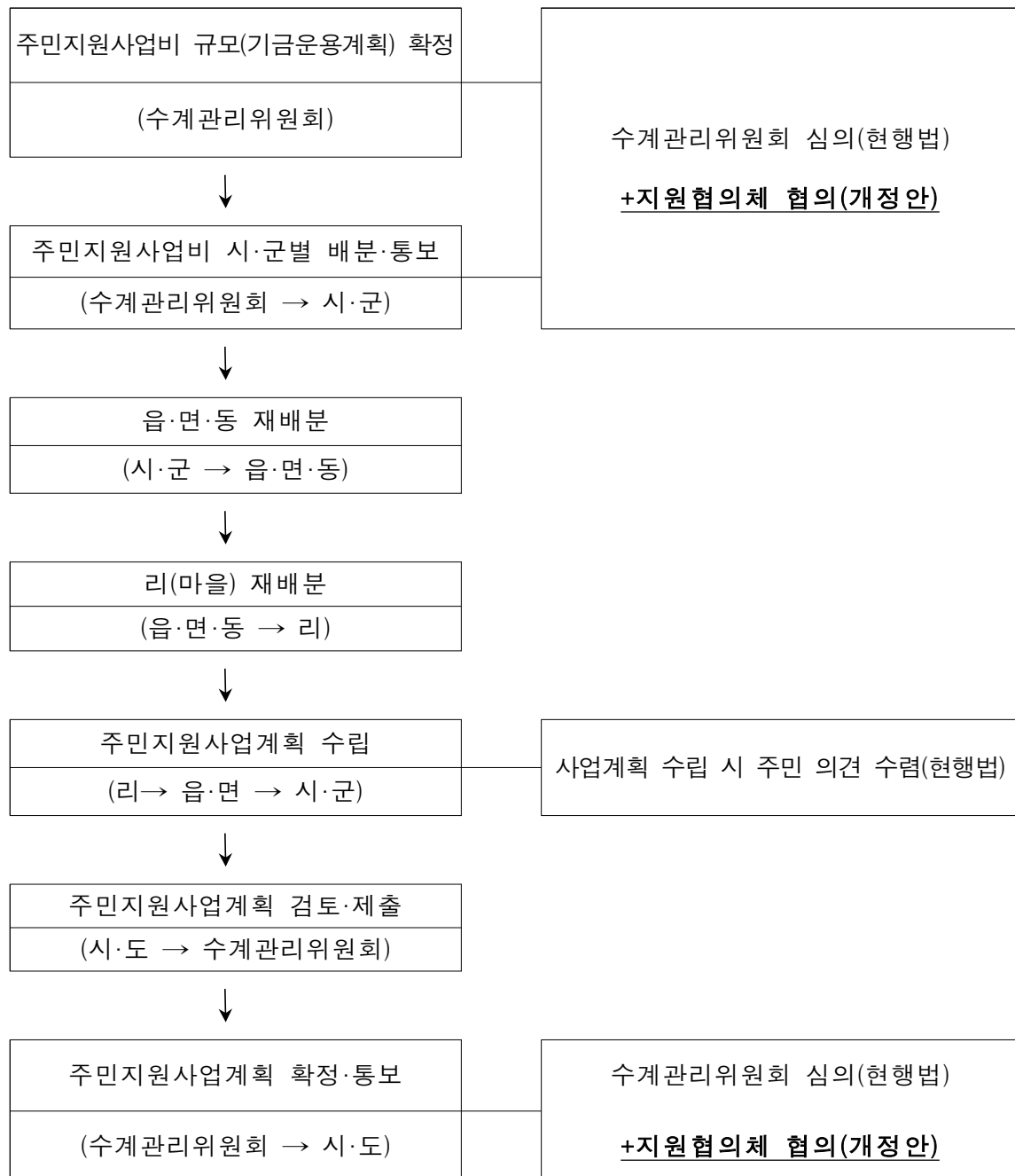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이원적인 협의는 주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여 사업 추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¹¹⁾.

이하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11) 환경부는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확정 이후 실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실무 절차)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원적 협의 및 중복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을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①주민지원사업비 규모 확정, ②시·군별 배분 및 ③사업계획 확정 시 실시되고 있고, 현행법상으로 이 과정에는 주민대표 등이 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①~③ 과정에서 지원협의체 협의는 (주민 의견수렴과) 이원적 협의 또는 중복절차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참고자료 1.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대상 확정 절차 참고).

※ 참고자료

1.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대상 확정 절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수계별 수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 위원장 : 환경부차관 - 위원 ①수자원정책관(공통) ②서울특별시 부시장 ③인천광역시 부시장 ④경기도 부지사 ⑤강원도 부지사 ⑥충청북도 부지사 ⑦K-water 사장(공통) ⑧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총 9명】	- 위원장 : 환경부차관 - 위원 ①수자원정책관(공통) ②산림청 국장 ③부산광역시 부시장 ④대구광역시 부시장 ⑤울산광역시 부시장 ⑥경상북도 부지사 ⑦경상남도 부지사 ⑧강원도 부지사 ⑨ K-water 사장(공통) 【총 10명】	- 위원장 : 환경부차관 - 위원 ①수자원정책관(공통) ②산림청 국장 ③대전광역시 부시장 ④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⑤충청북도 부지사 ⑥충청남도 부지사 ⑦전라북도 부지사 ⑧K-water 사장(공통) ⑨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총 10명】	- 위원장 : 환경부차관 - 위원 ①수자원정책관(공통) ②산림청 국장 ③광주광역시 부시장 ④전라북도 부지사 ⑤전라남도 부지사 ⑥K-water 사장(공통) ⑦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총 8명】
수계관리실무위원회			
- 위원장 : 한강청장 - 위원 ①원주지방청장 ②서울특별시 국장 ③인천광역시 국장 ④경기도 수자원본부장 ⑤강원도 국장 ⑥충청북도 국장 ⑦K-water 한강유역본부장 ⑧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 수력본부장 【총 9명】	- 위원장 : 낙동강청장 - 위원 ①대구지방청장 ②남부지방산림청 청장 ③부산광역시 국장 ④대구광역시 국장 ⑤울산광역시 국장 ⑥경상북도 국장 ⑦경상남도 국장 ⑧강원도 국장 ⑨K-water 낙동강유역본부장 【총 10명】	- 위원장 : 금강청장 - 위원 ①전북지방청장 ②중부지방산림청 청장 ③대전광역시 국장 ④세종특별자치시 국장 ⑤충청북도 국장 ⑥충청남도 국장 ⑦전라북도 국장 ⑧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⑨K-water 금강유역본부장 【총 10명】	- 위원장 : 영산강청장 - 위원 ①전북지방청장 ②서부지방산림청 청장 ③광주광역시 국장 ④전라북도 국장 ⑤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⑥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⑦K-water 영산유역본부장 【총 8명】

자료: 환경부

2. 개정안별 검토의견

(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 구성)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안 제23조의2 신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 ----- ----- ----- ----- ----- ----- ----- <u>심의와 제23조의 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지원협의체) ① 지원협의체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u>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u> 5. <u>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② <u>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상수원관리지역¹²⁾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음¹³⁾.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¹⁴⁾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12)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13)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4) **법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기금을 설치하고¹⁵⁾¹⁶⁾, 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또한 시장·군수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¹⁸⁾(이하 “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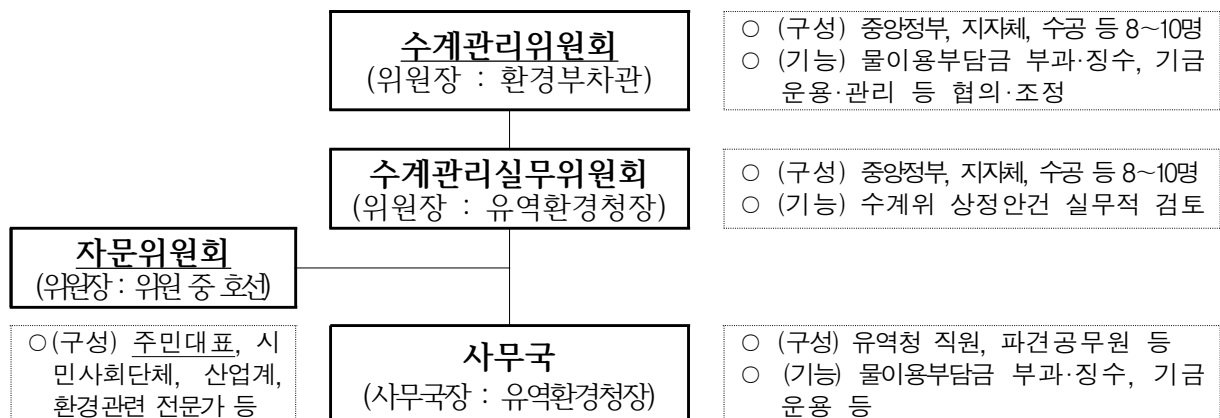
-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 15) **법 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16) **법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각 목 생략)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17) **법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에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 18) **법 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¹⁹⁾²⁰⁾하고 있으나,

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 해당 광역시·도의 주민대표 1명이 참여²¹⁾할 수 있을 뿐, 수계관리위원회에는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체계도



19)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제20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의 범위(제21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 **법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 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법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다만, 광주광역시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이에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행법 시행령²²⁾에서 시장·군수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신규 ‘지원협의체’를 통한 협의는 중복 우려가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이원적인 협의는 주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여 사업 추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

22) 법 시행령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 구성)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안 제12조의3 신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u>한강수계관리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 ----- -----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제12조의3에 따른 <u>지원협의체</u> 협의-----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2조의3(지원협의체) ① <u>지원협의체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

	<u>실된 자</u> 5. <u>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u> <u>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u> <u>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u> <u>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u> <u>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u> <u>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u> <u>나지 아니한 자</u> ② <u>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u> <u>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상수원관리지역²³⁾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음²⁴⁾.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²⁵⁾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

23)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24)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25) **법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치하고²⁶⁾27), 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⁸⁾.

또한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²⁹⁾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³⁰⁾(이하 “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26) **법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7) **법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班的 운영 지원
-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8) **법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教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29)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0) **법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³¹⁾³²⁾하고 있으나,

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 주민대표 1명이 참여³³⁾할 수 있을 뿐, 수계관리위원회에는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수계 관리위원회 운영 체계도



31)동법 시행령에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제1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의 범위(제13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제14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32)법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각 호 생략)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법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규정 제3조의2(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에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행법 시행령³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신규 ‘지원협의체’를 통한 협의는 중복 우려가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이원적인 협의는 주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여 사업 추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

34)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 구성)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안 제23조의2 신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u>심의</u> 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 ----- ----- ----- ----- ----- ----- ----- <u>심의와 제23조</u> <u>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3조의2(지원협의체) ① 지원</u>

협의체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u>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u> <u>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상수원관리지역³⁵⁾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음³⁶⁾.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³⁷⁾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

35)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36)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7) **법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치하고³⁸⁾ 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⁹⁾.

또한 현행법⁴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⁴¹⁾(이하 “수계관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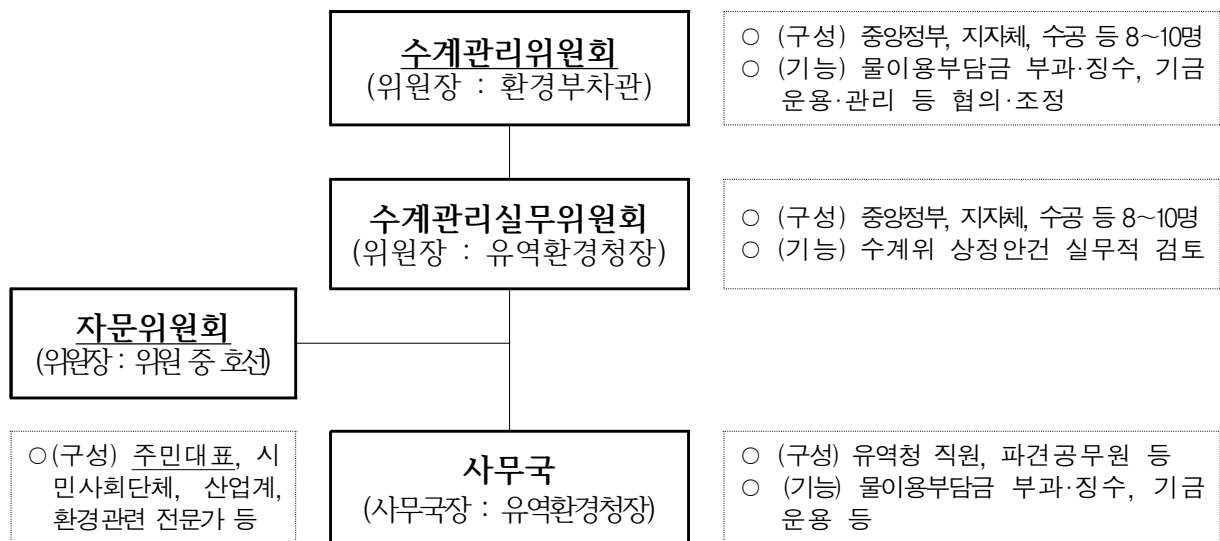
-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 38) **법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39) **법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각목 생략)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40) **법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외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각 호 생략)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 41) **법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⁴²⁾⁴³⁾하고 있으나,

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 주민대표 1명이 참여⁴⁴⁾할 수 있을 뿐, 수계관리위원회에는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체계도



42)동 법 시행령에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제20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의 범위(제21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43)법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법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법 규정 제4조(자문위원회)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이에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행법 시행령⁴⁵⁾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신규 ‘지원협의체’를 통한 협의는 중복 우려가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이원적인 협의는 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여 사업 추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

45)법 시행령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 구성)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안 제25조의2 신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 ----- ----- ----- ----- ----- ----- ----- <u>심의와 제25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제25조의2(지원협의체) ① 지원</u>

협의체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u>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u> <u>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상수원관리지역⁴⁶⁾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음⁴⁷⁾.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⁴⁸⁾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46)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47)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48) **법 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설치하고⁴⁹⁾ 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⁰⁾.

또한 현행법⁵¹⁾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⁵²⁾(이하 “수계관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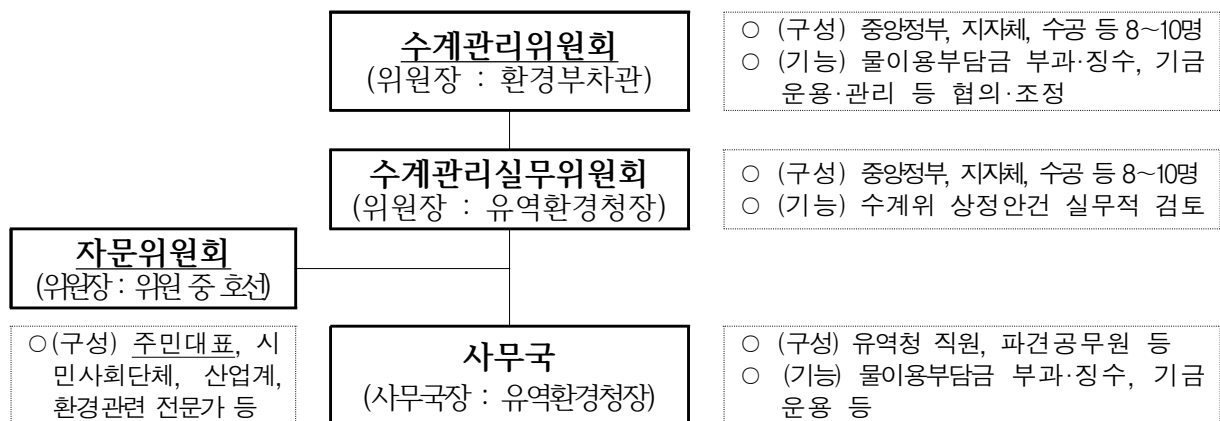
-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 49) **법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50) **법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 9의2.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각 목 생략)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51) **법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각 호 생략)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 52) **법 제35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⁵³⁾⁵⁴⁾하고 있으나,

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 주민대표 1명이 참여⁵⁵⁾할 수 있을 뿐, 수계관리위원회에는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체계도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3)동 법 시행령에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제20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의 범위(제21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54)**법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5)**법 제35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 법 규정 제4조(자문위원회)**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이에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지역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행법 시행령⁵⁶⁾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신규 ‘지원협의체’를 통한 협의는 중복 우려가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이원적인 협의는 주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여 사업 추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7

56)법 시행령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